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8464
----------	------

제안연월일 : 2013. 12.

제안자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12년 9월 21일 윤관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12년 10월 30일 김윤덕의원이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316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2013. 6. 17.)에 각각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나. 제31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3. 7. 25.)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다. 제320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2013. 10. 2.)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2. 대안의 제안이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업무상 작성한 저작물은 공익 목적으로

예산을 투입하여 제작된 저작물이므로, 이러한 저작물에 대해서는 저작권자의 보호를 배제하고 납세자인 일반 국민들의 자유로운 이용을 보호하고자 함.

또한, 현행 「저작권법」은 학교 등에서의 수업목적이나 수업지원 목적으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배포·공연·방송 또는 전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교육현장의 수업방식이 다양화되고 있어 학교교육 목적을 위한 저작물 이용형태를 보다 다양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는바, 현행 「저작권법」의 ‘학교교육 목적의 저작권 제한’에 “전시” 및 “공중송신”이 포함되도록 함.

### 3. 대안의 주요내용

-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업무상 저작물에 대해서는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의2 신설).
- 나.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학교교육 목적의 저작물 이용형태에 ‘전시’를 추가하고 ‘방송 또는 전송’을 상위 개념이 ‘공중송신’으로 변경함(안 제25조제2항).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공공 저작물의 자유이용)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2.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4.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경우

② 국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제4호의 공공저작물 중 자유로운 이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제2항 중 “공연·방송 또는 전송”을 “공연·전시 또는 공중송신”으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제25조”를 “제24조의2, 제25조”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lt;신    설&gt;</u></p>	<p><u>제24조의2(공공 저작물의 자유이용)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u>1.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u></li> <li><u>2.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u></li> <li><u>3.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u></li> <li><u>4.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경우</u></li> </ol> <p><u>② 국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u></p>

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제4호의 공공저작물 중 자유로운 이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의 이용) ① (생략)  
②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및 이들 교육기관의 수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교육지원기관은 그 수업 또는 지원 목적상 필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의 이용)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  
-----

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  
제·배포·공연·방송 또는 전송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  
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  
에는 전부를 이용할 수 있다.

③ ~ ⑩ (생략)

제36조(번역 등에 의한 이용) ①  
제25조, 제29조, 제30조 또는  
제35조의3에 따라 저작물을 이  
용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번역·편곡 또는 개작하여 이용  
할 수 있다.

② (생략)

-----  
-----  
-----공연·전시 또는 공중  
송신-----  
-----  
-----  
-----  
-----.

③ ~ ⑩ (현행과 같음)

제36조(번역 등에 의한 이용) ①  
제24조의2, 제25조,-----  
-----  
-----  
-----  
-----.

② (현행과 같음)